

제 276회 임시회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
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: 2061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창진
(바른정당, 송파구 제2선거구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

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남창진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
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지난 2016년 7월 7일 개정된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
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
따라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
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한 바 있으나, 일부
누락된 사항 등이 있어 이에 대해 정비하고, 자치구 옥
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
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
이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
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
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